

(시민봉사과)

토지·임야대장 일제정비

□ 사업개요

- 토지·임야대장 일제정비를 위한 토지등기부 전수조사
-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의 전산불일치자료에 대한 자료 정비

□ 추진실적

- 토지등기부 전수대사 완료 : 28,536건
 - 지적공부 불일치 자료정비 : 3,068건
 - 토지표시(지목, 면적 등) 불일치자료 정비 : 375건
 - 착오등기된 토지소유자 주민번호 정정안내 통보 : 61건
 - ※ 「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」 등기서류 대행작성
 - 국유지 명칭변경 대상 관련부서 통보 : 2,115건
 - 토지·임야대장 전산구분코드 자료정비 : 517건

□ 향후계획

- 정기적으로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 상호간 자료일치여부 확인

□ 추진성과

-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일치화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
- 정확한 토지정보자료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관련부서간의 토지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

토지분할허가 조건 미 이행 토지 일제정비

□ 사업개요

- 대 상 : 2000년 ~ 2007년도 까지 분할허가 조건 미이행 토지
- 업 무 량 : 75필지
- 사업기간 : 2008. 1월 ~ 2008. 12월
- 사업내용
 - 일반지역에서 일단의 토지를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시 인접 필지와 합병 및 지목변경 조건등으로 분할허가 된 필지중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일제 정비 추진

□ 추진실적

- 분할허가 일제정비 계획 수립 ————— 2008. 1월
- 분할허가 미 이행 토지 조서 작성 및 안내문 통보 —— 2008. 2월
- 분할허가 필지 미 신청에 따른 안내문 2차 송부 —— 2008. 10월
- 토지분할허가 이행 대상 토지 공부 정리 실적 —— 11필지(15%)

□ 문제점 및 대책

- 정리대상 필지의 90% 이상이 근저당권,대지권 설정에 따른 합병 처리 난항
- 지속적인 안내와 업무의 중요성 인식 고취로 분할조건 처리 신청 유도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정비 해결을 위한 담당자와 토지소유자간 안내 통화 실시 : 수 시
- 소유자 신청 필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시행 : 수 시

□ 추진성과

- 비효율적 토지의 형태를 변경 정리함으로서 합리적·효율성 증진
-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에 따른 지적행정 신뢰성 추구

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

□ 사업개요

-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로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
- 부동산중개업소 지도·단속강화로 부동산 투기 근절
- 무등록중개업 및 불법중개행위 사전차단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

□ 추진실적

-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 및 안내 실시 : 2,051개소
-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관련 SMS 서비스 제공 : 1,297건
- 부동산중개업소 지도·점검 실시
 - 대 상 : 444개소, 행정처분 : 7개소
- 무등록중개업 및 토지거래위반 토지 신고포상금 지급 : 1건(500천원)

□ 향후계획

-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 이행명령 예고 및 미 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
 - 기 간 : 2008 .11월 ~ 2009. 2월
 - 대 상 :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자

□ 추진성과

- 실수요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으로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
-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

새주소 사업의 완벽한 추진

□ 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법시행 이전 추진사업 정비지침 시달 (08.01. 경기도)
도로명주소 업무편람 시달 (08.04.04. 행정안전부)
- 정비대상 : 부적절한 도로명, 종속도로 설정, 기초번호 부여 및 간격,
도로위계명, 기·종점 설정
- 추진내용 : 도로구간(351구간), 도로명판(743개소), 건물번호판(12,599)
전산시스템

□ 추진실적

- 새주소 공간DB 오류수정 : 3,449건 (1월~3월)
- 건축물용도 미설정건물 정비 : 6,306건 (3월~6월)
- 새주소 재정비 추진을위한 도로명 개선 (6월~8월)
- 부여오류로 인한 건물번호 재정비 : 1,200건 (6월~10월)

□ 향후계획

- 도로명판 일제조사 지속 추진
- 새주소 정비대상 개선작업
- 고지·고시 대비 새주소 관리시스템 정비

□ 추진성과

- 법시행이전과 이후 도로명 주소체계의 통일성 확보
- 새주소의 정확성 제고 및 주민의 신뢰성 확보
- 새주소 고지·고시 대비,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